

# 상임이사·지원·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직 운영세칙 등 6개 세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세칙

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

일괄개정 2023. 12. 18. 세칙 제220호

제1조(「계약직 운영세칙」의 개정) 계약직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지 제3호서식 중 “강원도”를 “강원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2조(「운영직 관리세칙」의 개정) 운영직 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 1 운영직 직무분류 및 정원표 직무란 중 “지원 시설관리”를 “본부 시설관리”로,  
별표 2 운영직 직무표 직무란 중 “시설관리원(본원, 지원)”을 “시설관리원(본원,  
본부)”으로, 별표 3 임용자격기준표 직무란 중 “지원시설관리원”을 “본부시설관리원”  
으로, 별표 4 통상근무 및 교대근무 근로자 근로시간 중 “지원”을 각각 “본부”로,  
별표 6 운영직 직무기본급 월액표 중 “지원”을 각각 “본부”로, 별표 8 운영직 직무급  
지급대상 및 금액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, 별지 제1호서식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 중  
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 한다.

제3조(「인사규정 시행세칙」의 개정)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
한다.

제12조제1항부터 제2항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, 제14조제2항제1호 중 “지원장”을  
“본부장”으로, 제15조제1항 중 “실(지원)장”을 “실(본부)장”으로, 제51조제2항 중  
“실(지원)장은 실(지원)”을 “실(본부)장은 실(본부)”로, 제52조제1항부터 제2항 중  
“지원”과 “지원장”을 각각 “본부”와 “본부장”으로, 제96조제1항 중 “실(지원)장”을  
“실(본부)장”으로,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“지원”을 각각 “본부”로  
한다.

제4조(「회계규정 시행세칙」의 개정) 회계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15조 조문의 제목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, 제22조제2호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, 제42조제2항 중 “지원장”을 “본부장”으로, 별표 1 및 별표2 중 “본·지원”, “지원”, “지원장”을 각각 “본원·본부”, “본부”, “본부장”으로, 별표 4중 “본지원”을 “본원본부”로 한다.

**제5조(「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세칙」의 개정)**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 한다.

**제6조(「채용업무 운영세칙」의 개정)** 채용업무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, 별지 제6호서식 근로계약서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, 별표 1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기준 중 “강원도”를 “강원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